

2024년 정보보호 해외인증제도 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공고안내서 및 운영 가이드라인

2023. 12.

목 차

I. 사업내용	1
II. 신청서제출	5
III. 선정평가	7
IV.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9
V. 지원금 집행	11
VI. 사업보고서 및 정산·회계감사보고서	14

I . 사업소개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4 정보보호 해외인증제도 획득 지원사업
- (운영기간) 2024년 1월 ~ 12월
- (지원규모) 국내 중소·중견 정보보안/물리보안 정보보호 3개社
- (목적)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의 국제보안인증 등 해외인증획득 지원으로 대외 공신력과 기술가치성 확보 및 국별 필수인증획득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 (주요내용)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①해외인증획득 제반비용 지원, ②국별 필수인증 중심 컨설팅 기관 협업 취득정보 제공 및 수출 지원

□ 모집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인증 획득 예정 및 진행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 및 법인
- * 운영기간 내 취득이 어려운 경우 KISIA와 사전 협의 필요(인증 취득 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인증별 지원기간 1년 이상 연속 지원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 정부지원 75%의 비율로 신청한 기업은 매출증빙 필요함)

당해연도 신청불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③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어 있는 기업,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업 ⑤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신청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증빙필요) ⑥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⑦ KISIA 해외진출지원팀 2024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	----------------------------------------------------------------------------------------------------------------------------------------------------------------------------------------------------------------------------------------------------------------------------------------------------------------------------------------------------------------------------------------------------------------------------------------------

○ (지원 비율) 총 사업비 75%(또는 70%) 정부지원금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5% (전년기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70% (전년기준 매출액 3천억원 이상)

○ (지원 금액) 2개사 7,50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기업 자부담 2500만원)
1개사 3,60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기업 자부담 1200만원)

- ※ 75%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이며, 전년기준 매출액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 ①선정평가 상 높은 점수, ②인증 취득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 내용)

- 해외인증획득을 위한 제반 소요 비용 지원

시험인증 비용	시험성적서·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 인증획득 후 최초 연회비에 한함 ** 사후심사, 갱신심사의 경우 지원 불가
컨설팅 비용	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기타 비용	국제인증포럼·단체 활동비용 및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단, 인증 취득 목적에 한함

- 검증된 해외인증 컨설팅 기관 및 표준/인증 개발 기업 DB 구축 및 연계를 통한 국별 필수인증취득 정보 제공

- ※ 공고문을 통해 협업 기관 연내 상시 모집 예정('24년)

○ (참가기업 선정) 기업 발표를 통한 선정평가

- ※ 발표자료 제출은 자율, 미제출 시 서식 2 ~ 서식 3 활용하여 발표 진행

□ 사업 추진일정

(23.12.~'24.12.)	12월	1월	2월	3~4월	5월	6~7월	8월	9월	10-11월	12월
신청 및 선정	신청 12/28	선정평가								
계약체결										
사업비 지급			선금					잔금		
보고서 제출					현황 5/15		중간 8/14		현황 10/16	최종 12/20
사업종료										

추진절차	일시	내용	수행주체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23년) ~12월 28일(목)	○ 신청기업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참가기업 선정평가	('24년) 1월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기업 발표 평가 ○ 참가기업 선정	해외진출지원팀/ 신청기업/ 선정평가위원
계약체결	1~2월	○ 참가기업 협약체결서류 제출 ○ KISIA-참가기업 계약체결	참가기업/ 해외진출지원팀
선금 지급	2~4월 중	○ 참가기업 선금지급서류 제출 ○ 정부지원금 1차(70%) 교부	참가기업/ 해외진출지원팀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	~5월 15일(금) ~10월 16일(월)	○ 사업 추진실적 현황 제출 ○ 사업비 집행 현황 제출	참가기업
중간보고서 제출	~8월 14일(수)	○ 사업 중간보고서, 수출실적증명 서류 및 인증 취득 증빙서류(시험성 적서, 인증서 등) 메일 제출	참가기업
잔금 지급	9월 중	○ 참가기업 잔금지급서류 제출 ○ 정부지원금 2차(30%) 교부	참가기업/ 해외진출지원팀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20일(금)	○ 사업 결과보고서, 수출실적증명 서류 및 인증 취득 증빙서류(시험성 적서, 인증서 등) 제출	참가기업
정산자료 제출 및 회계감사	~12월 20일(금)	○ 참가기업 회계법인 자체 섭외 및 회계감사 진행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참가기업 /회계법인
사업평가 및 종료	12월 중	○ 최종 사업 결과 평가 및 사업 완료 보고	해외진출지원팀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 정보보안/물리보안 해외인증제도목록 예시

분류	소분류	인증/표준/포럼(예시)	비고
정보보안제품 (H/W, S/W)	제품 보안성평가	CC인증	국제
		최고등급 보안인증 (CSPN_Certification de Sécurité de Premier Niveau)	프랑스
	제품 성능평가	ICSA Labs	미국
		Tolly Group	
		Check Mark	영국
		VB100	
		AV_Test	독일
STQC, AV Comparatives, Malware Feeds from MRG Effitas, Mitre Att&ck, Miercon...	기타		
암호모듈검증	CMVP	미국	
정보보호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1	국제
		FISMA, CMMC, SOC, CCPA	미국
		Cyber Essentials	영국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	중국
	클라우드 보안평가*	FedRAMP, CSA	미국
디지털 포렌식 등 시험기관 평가	ISO 17025	국제	

* 클라우드 보안평가는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 포함

분류	소분류	인증/표준/포럼(예시)	비고
물리보안제품 (H/W, S/W)	바이오인식	CC인증*	국제
		FIDO	국제
		BC WG (Biometric Consortium Working Group)	미국
		DoD CDTDPO (Counterdrug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Office)	
		GSA EPD Lab (FIPS-201)	
		FBI인증 (Fingerprint Image Quality Certification Program)	
		NIST ITL (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	
		CSE-EWA (Common Security Establishment - Electronic Warfare Associates)	캐나다
		BSI, TeleTrust	독일
		IPA, NSICCS	일본
	영상감시기기	ONVIF (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국제
		PSIA (Physical Security Interoperability Alliance), UL CAP(Cybersecurity Assurance Program)	미국
		CSA	캐나다
		I-LIDS, CPNI, CES, Secure by Default(NCSC)	영국
		PSE,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일본
	기타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CE(Conformite Europeenne)	유럽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일본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
		ADISA	영국

* CC인증은 정보보안/물리보안제품 공통

※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으로 1차분류하고, 정보보안은 제품과 서비스, 물리보안은 바이오인식, 영상감시기기로 2차분류하여 정보보호 해외인증을 목록화함

II. 신청서 제출

1 신청방법

-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까지
 -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jhr@kisia.or.kr로 메일 제출
- 제출 자료

번호	서류명	수량	비고	
01	사업 신청서	1	서식1 참조	필수
02	추진계획 인증 개요	1	서식2 참조	필수
03	사업수행계획서	1	서식3 참조	필수
04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	유효기간 내	필수
0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붙임1 참고	필수
06	유사사업실적 관련 서약서	1	붙임2 참고	필수
07	청렴계약이행각서	1	붙임3 참고	필수
08	법인 인감증명서	1	-	필수
09	법인등기부등본	1	-	필수
10	사업자등록증	1	-	필수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	필수
12	사용인감계	1	-	선택
13	최근 3년간 재무제표(세무사도장 날인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중견기업 매출액 확인가능서류)	1	-	선택
14	기타(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서 등)	1	-	선택

※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임박한 중소기업확인서는 미리 갱신 부탁드립니다.

- 선정평가 : 2024년 1월 중
 - 선정평가는 참가기업 제출서류를 활용한 발표로 진행될 예정
 - 발표자료(파워포인트 등) 제출은 자유 (미제출시 신청서류로 발표 진행)
- 문 의 :
 - 해외진출지원팀 정혜린 주임(☎02-6418-5645, jhr@kisia.or.kr)

② 신청서 제출방법

- 수행계획서 및 수행계획요약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해야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③ 신청 시 유의사항

- KISIA 해외진출지원팀의 2024 해외진출 맞춤형 수출 지원(수출GO) 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 2024년도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음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하며, 유사사업실적 서약서와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기타 지원조건

- 제출서류 상 기재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수행 지침, 협약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 사업년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허위 영수증 제출, 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차기 연도에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Ⅲ. 선정평가

① 평가위원회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내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 선정평가 : 2024년 1월 중
 - * 일시 변경 시 접수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②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 신청서, 수행계획서, 수행계획요약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한 서류 심사 및 참가기업 발표 심사 등에 관한 서류심사
 - 과기정통부의 승인 하에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개최, 기업 제출서류 활용 발표평가 진행 예정
- 선정기준
 - 평가결과 평점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
 - 평가위원별 결과를 취합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 후 총점 및 평점 산출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순위선정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기준	배점
I. 제안기업 일반		20
1. 사업 현황	- 동 분야의 사업성과 및 수출현황 등 해외진출 현황	10
2. 제품 및 기술현황	- 솔루션 및 서비스 내용의 구체성 등 제품의 종합 평가	10
II. 사업목표 및 타당성		25
1. 추진전략	- 인증획득을 통한 해외진출사업 활용계획의 적절성 (대상국가 선정 및 진출을 위한 프로세스 중심)	10
2. 해외인증획득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지원의 타당성 (당해연도 안에 신청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경우 등) (진출국가 및 현지기관 인증서제출 관련 의무 요구사항 등) - 인증획득을 통한 해외수출 연계 및 확장성	15
III. 인증획득 가능성		20
1. 인증획득 단계의 성숙도	- 인증획득 추진절차 중 현재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현재 추진 중인 시험인증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접수증, 견적서 등 증빙)	10
2. 참여기업 수행역량	- 인증획득을 위한 참여기업의 전담조직, 전문가 보유여부, 인증획득경험 여부 등 수행능력 평가	10
IV. 추진계획의 적합성		20
1. 추진일정 및 보고 계획	- 일정관리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2. 제안금액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와 제안금액의 적정성	10
V. 기타		15
1. 과기정통부 유관사업 참여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취득사(22~23년)	5
	- 'K-시큐리티얼라이언스' 참여기업으로서 혁신 통합보안 개발제품 보유기업	5
2. 기타 사항	- 최근 3개년 KISIA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이력 (사업당 1점, 최대 5점)	5
합 계		100

IV.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1 협약 체결 안내

- 참가기업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번호	서류명	수량	사용처
01	사업신청서 + 추진계획 인증 개요 + 수행계획서	1	협약체결
02	협약서	1	
03	이행(계약)보증보험(정부지원금의 10%)	1	
0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0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07	사업자등록증명원	1	
08	청렴계약이행각서	1	

- ※ 협약서상의 협약시작일은 보증증권,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 서류의 발급일 중 가장 늦게 발급된 날짜를 시작일로 함

2 지원금 교부 안내

- 선금은 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신청 시 하기 서류 제출 필수
- ※ 협약 체결 및 지원금(선금) 신청 제출 서류 확인 완료 후 기업 사업비 통장으로 선금 (2~4월중) 지급 예정 (지급 시기는 추후 변동 가능)

번호	서류명	수량	사용처
01	지원금(선금) 신청 공문	1	선금금 신청
02	사업비청구서	1	
03	1차 지원금(선금) 사용내역서	1	
04	통장사본, 기업부담금 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협약체결일~제출일)	1	
05	이행(지급)보증보험(정부지원금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	
0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	
07	4대보험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	

- * 4대보험완납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 :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유효기간 : 제출 당월 10일 ~ 익월 9일(휴일 발생기간 만큼 산입) 필수 확인

- 잔금은 지원금의 30%를 지급하며, 신청 시 하기 서류 제출 필수
- ※ 중간보고서 제출 직후(9월 중) 지급 예정 (지급 시기는 추후 변동 가능)

번호	서류명	수량	사용처
01	지원금(선급금) 신청 공문	1	잔금 신청
02	사업비청구서	1	
03	지원금(잔금) 사용내역서	1	

2 참고사항

○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 보험가입액 : 정부지원금의 10%
- 피보험자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 보험기간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협약기간) 다음날 까지
- 보증내용 : 정보보호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계약이행보증
- 보험계약자 : 지원 대상 법인명
- ※ 협약서 사본을 사용하여 협약 체결 전일 또는 당일 날짜로 사전 발급

○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 보험가입액 : 정부지원금(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 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
- 피보험자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 보험기간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 보증내용 : 정보보호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반환지급보증
- 보험계약자 : 지원 대상 법인명

○ 사업비 통장

- 해당 사업만 관리하는 **법인명의로 통장잔고 '0'인 기보유 통장** 또는 **신규발급 통장을 사업비 통장으로 활용하여야 함**
- ※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사업비 집행

V. 지원금 집행

1 집행기간

- 총 사업비(자체부담금+지원금)에 대한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 단, 회계감사비용은 예외
 - ※ 카드 사용의 경우 집행기간은 카드 사용일 기준이 아닌 사용금액 결제일 기준임
 - ※ KISIA와 협의 하에 협약서 상 수행기간 외 집행 가능(인증취득비용 등)
- **총 사업비는 협약기간 마감일까지 반드시 전체 소진**
 - * 사업비 전체 소진 불가할 경우,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KISIA 담당자와 사전 협의

2 지원금 사용 원칙

- 총 사업비(자체부담금+지원금)는 당해연도 사업 추진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가능하고, 발생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3 지원금 사용원칙

- 수행기업은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우선 사용이 원칙**이며, 정산 시 총 사업비중 지원금 집행 잔액과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등은 전액 반납
-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총 사업비 변경의 경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4 사업 및 예산계획의 변경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마감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음**[서식9]

- 예산 변경 : 각 항목별로 30% 초과 변경 시 변경 승인요청
- 기타 사업수행 계획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대상국가, 대상 품목/서비스, 사업책임자 변경, 합병/폐업 등)

○ 변경승인 요청 및 변경신고서 제출 방법

-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공문과 함께 e-mail 제출

총 사업비 사용가능 회계계정	총 사업비 사용불가 회계계정
<p><input type="checkbox"/> 직접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현지컨설턴트 활용 등) ○ 수수료 및 사용료(해외인증 수수료, 테스트장비 운송 등) ○ 용역비(통번역, 법률검토, 현지대행기관 활용 등) ○ 기타(회계감사비, 이행보증보험료, 환차손,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송금수수료 등) 	<p><input type="checkbox"/> 직접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 홍보비(해외홍보자료 제작 등) ○ 자산 취득비(장비구입 및 수리비), 감가상각비 ○ 자가시설 이용료 ○ 회의비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 ○ 전화요금 등 경상경비 ○ 유흥업소에서의 사용금액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 <p><input type="checkbox"/> 인건비</p>

5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 분	종 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현금 사용 증빙	현금 영수증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 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 금 계산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부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화소개 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 령 확인증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자필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부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화소개 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간 이 영수증	·3만원 미만의 지출에 한함 ·총액 1백만원까지만 인정 (단일 건에 대해 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 여러 개로 분할 처리하는 경우 불인정)	사용내역서
체크/신용 카드 사용증빙	사 용 영수증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지원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 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 (카드사 발급)

-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과 함께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스캔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5 해외에서의 사업비 사용원칙

- 해외사용 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비, 전문가활용비 등은 국내에서 외환 송금을 원칙으로 함
 - 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 기준(카드사에서 해당일 환율로 결제)
 - 현금 환전(매입, 매출)은 환전하는 일자의 환율 적용
 - ※ 환차손 발생 시 기타 비용으로 처리
- 3만원 이상을 현금 지급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출장신청서,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급금액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 출장 품의 및 결과보고 정산 서류에 첨부 (사진 및 회의록 등 증빙 필수)

VI. 사업보고서 및 정산·회계감사보고서

1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미준수 시 차후년도 사업모집 시 불이익

-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 2회 제출
 - 2024년 5월 15일(금), 2024년 10월 16일(월) 이메일 제출[서식10]
- 중간보고서 : 2024년 8월 14일(수) 18시까지 제출 [서식4]
 - 결과보고서 : 2024년 12월 20일(금) 18시까지 제출
 - 수출실적증빙* 제출 필수
 - * 수출신고필증(관세청), 간접수출증명서(한국무역통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한국무역협회) 세 가지 서류만 인정
 - 인증 발급 단계에서 발행되는 제반 서류* 제출 필수
 - * 시험성적서(Test Report), 심사보고서(Audit Report), 인증서(Certificate) 등
 - 사업 추진 과정 발생 증빙 첨부
 - * 인보이스, 영수증 등
 - 사업기간(2024년) 내 취득이 불가능한 인증의 경우, 최종 취득 완료 후 서류 제출 필수
-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 2024년 12월 19일(화) 18시까지 제출 [서식4]
 - 정산보고 제출 전 회계법인에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은 회계법인과 개별적으로 협의(정산 부분 참조)
 - KISIA와의 합의 하에 주요 산출물 제출 일정 변동 가능
 - 각 보고서는 주관기업 명의로 발행되어야 함

2 제출방법

- 글로벌성장단 해외진출지원팀 정혜린 주임(jhr@kisia.or.kr) 앞으로 신청양식 메일 제출

3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수량	보고내용	비고
01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	1	진행현황보고	서식 10
01	중간보고서	1	중간보고	서식 4
01	결과보고서(산출물 등 관련 증빙 포함)	1	결과보고	서식 5
01	정산보고서	1	정산보고서	서식 6
02	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거래내역 확인서	1		
03	지원금 계좌 해지 후 통장사본(전체페이지)	1		
04	회계감사보고서	1		서식 7
05	정산내역서	1		서식 8
06	지출원인 근거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회계감사시 제출된 서류일체	1		
07	잔액/불인정액 등 송금(입금)증	1		

4 정산 및 감사 절차 등

- 수행기업은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섭외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함
 - 지원대상 사업자가 회계 감사 비용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
- 수행기업은 정산보고서 등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 수행기업에게 송부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회계감사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 협회에 제출하고, 정산잔액은 '0'원이 되어야 하며 반납 불가
 - 회계감사보고서 실시 기업의 직인과 담당 회계사 직인 날인 필수
 - 정산내역이 수록된 파일, 송금내역서, 송금영수증을 e-mail로 별도 전송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산결과 검토(필요시 실사) 후 오류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할 수 있음

5 정산잔액 송금방법

- 송금계좌
 - 계좌 : *****_**_***** ※ 별도안내
 - 예금주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송금 의뢰인명 표시방법(송금내역서의 송금의뢰인과 일치)
 - 기업명으로 송금
- 송금 후 송금 영수증(또는 입금증)을 스캔하여 사업담당에게 e-mail 송부
- 최종 정산잔액 정산내역서 송부 : [서식6] 참조

6 기타 참고사항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지원한 정보보안/물리보안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다음과 같이 가·감점 부여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거나 해당 기업에 대하여 차기년도 동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 해당 기업에 대하여 차기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
- *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함
- 본 공고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이드라인을 준용함